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TAX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하나, 금번 호는 비정기적 간행물임을 전해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KPMG

Tax 6

3 May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 베트남 EPE 제도 개정사항

### EPE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 신설

#### 베트남 EPE 제도 개요

베트남의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는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 시 해당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유보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PE는 관세 등이 유보된 원자재를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베트남 관세당국에서는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해당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EPE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수불장부를 기록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세관에 수불관리에 대한 정산보고(Customs Finalization Report, "CFR")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PE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

관세 유보 등 세제혜택을 누리는 EPE 등에 적용되는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의 신설규정 2021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 영역과 분리된 견고한 울타리를 구비할 것
  - 게이트 또는 입구만을 통해 EPE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을 보장할 것

- 24시간 내내(공휴일 및 휴일 포함) 출입구 및 물품보관 장소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구비할 것
  - 기록 자료는 사업 관할세관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해당 기업은 최소 12개월 동안 동 자료를 보관할 것
-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사용 현황에 대한 수입, 수출 및 재고의 결산 보고(CFR, 역주)를 위해 EPE의 비과세 수입물품 관리 소프트웨어(Software)를 구비할 것

### 세관 검사 및 감시 조건의 이행 강제

동 신설 규정은 신규로 EPE를 취득하려는 기업 외에도 기존 EPE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PE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관할세관에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는 통지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세관은 충족 여부 검사 후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통지를 송부하게 되며, 미 충족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EPE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완을 통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EPE에 부여되는 관세 유보 등의 세제혜택이 배제되며, 관할세관으로부터 조건 충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세제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PMG 의견

EPE는 세금 유보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동 조건의 신설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보다 엄격한 관리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물리적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구비 외에도 회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비에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많은 현지 기업들이 담당자 개인의 수기관리를 통해 물품의 수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번 신설 규정은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EPE들로 하여금 수불관리 목적의 소프트웨어 즉, 수불관리 시스템의 구비를 1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app](https://kpmg.com/app)

